「지역공감 온(溫)택트 캠페인 | 지정기탁신청서(현금)

소속기관명

기부자 (명칭/성명)				등록번호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법인일 경우)	담당자/연락처						
지정내용	「지역공감 온(溫)택트 캠페인」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원 등 ※ 기부금 잔액이 발생될 경우, 해당 협약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이월 사용						
지정대상	경남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중위소득 100% 이내 취약계층						
기부금액		입금 (예정)일	2021년	월	일	입금 계좌	농협/289-01-006978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

본사(본인)는 위와 같이 기부금을 지정기탁하고자 신청하며, 기부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귀회 회규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반성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직인)

☞안내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1. 지정대상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2. 지정대상과 기부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3. 기타 지정내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회규에 위배되는 경우
- ※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 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e-mail (선택)기부금결제정보(CMS 출금계좌, 카드) 등	모금회에서 처리하는 기부관련 업무(기부신청, 기부내역확인, 확인서 발급, 기부자서비스 등)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 및 이력 확인, 기부자서비스 등 기부관련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금융결재원, 이니시스, 해당은행	(CMS)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 결제	기부금 결제 중단시 까지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콜센터 상담이용, 기부금결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1)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발급	5년

☞ 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이용

제공 받는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국세청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 기부금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 제공시 까지
㈜한국코 퍼레이션	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콜센터 이용 시 본인확인	위탁업체 계약 종료시 까지

☞ 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콜센터 상담이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1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직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귀하

¹⁾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 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